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35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9. 4.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찾아와 피고가 원고의 전남편에게 빌려준 1,600만 원으로 전남편이 땅을 사서 큰돈을 벌었다면서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강박상태에서 4,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4,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